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 9. 12.] [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, 2020. 9. 12., 제정]

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(장기기증지원과), 02-2628-3611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 단체 등으로 한다.
 -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, 요골, 척골, 대퇴골, 경골, 비골을 지칭하며 좌·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.
 - 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2. 심장판막(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, 폐동맥판막)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3. 혈관 10㎝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4. 피부 200m² 당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5. 늑연골 2개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6. 반월상 연골판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7. 근막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8. 신경 10cm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9. 심낭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 - 10. 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.
- **제3조(지원내용)** ①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.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.
 - ② 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하며, 뇌사장기기증자(안구만을 기증한자 제외)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.
 - ③ 조직 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.
- 제4조(지급기준)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.
- **제5조(지급신청)** ①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(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)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2.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중 해당서류
- 3.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4.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
- ②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 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지급에 대한 사후관리) 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은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부칙 <제3호,2020.9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